

「사전 정보 제공」제도(PIC)

우리나라 긍정적 검토, 도입 바람직
사용자·소비자·환경보존에 큰 역할 기대



이 정 운 농약연구소 농약생물과장

화합물의 국제교역시 위험물 평가 및 이와 관련된 정보교환의 기본원칙과 이행방법을 주지시키기 위한 아·태(亞·太)지역회의로서 「PIC 이행에 관한 회의」가 91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필자와 국립환경연구원의 이민호 연구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했고 업계에서도 4명이 동참했다.

PIC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이의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PIC 이행에 관한 지역회의

UN의 FAO, UNEP에 의해 조직되고 FAO 地域網 事業과 農藥行動規約 (GCP/INT/457/JPN)의 주관하에, 필리핀 환경·자연·자원성과 농무성의 후원으로 열린 이 워크샵에는 PIC지정기관 담당자와 26개국의 농약관련 정부대표를 포함, 132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국제무역에 있어 화합물에 대한 국가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개정된 런던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 '89. 5. 25)과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관리규약의 수정된 제2항과 9항의 규정 및 PIC의 정보교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이해시키고, 국제교역에서 금지되거나 규제된 화합물에 대한 PIC절차 운용에 관한 정부문서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PIC절차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충고를 제공하며, PIC목록에 있는 화합물에 대한 금지 또는 규제의 여부를 결정할 때 안내문서의 활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역별, 분야별 미래협력사업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데 있다.

PIC 제도는 농약을 수입하는 국가에게 사전에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보를 충분히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PIC제도의 정의

PIC(Prior Informed Consent : 事前情報提供) 제도란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수출은 수입국 정부가 해당농약에 관한 합당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사전(事前)에 제공받은 상태에서 수입국 정부당국의 명백한 동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사전(事前)에 위해(危害)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보를 충분히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약수입에 관한 동의 또는 반대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PIC 채택의 필요성 및 잇점

농약의 오, 남용(誤濫用)으로 인한 중독사고, 농약을 이용한 자살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

정으로 기조연설(基調演說)에서 도 관계자들에 의해 이와같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독성이 강하고 사용금지된 농약을 개발도상국에 덤핑판매하고 있어 농약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농약회사는 그 시장을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으로 다변화(多邊化)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농약 중독사고는 대부분이 안전성에 관한 법조항이 미비한 제3세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IC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첫째로 수입국에 정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사용금지 또는 등록취소된 농약의 수입이 억제된다. 둘째로 농약 안전사용과 관련된 선진제도가 도입되고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중독감소를 위한 연구기반이 확충됨과 동시에 환경오염이 사전에 방지되므로 농약사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나라 농약공업의 수준이 향상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잇점이 있다.

PIC를 움직이는 국제민간기구

PIC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국제민간기구는 UNEP(유엔환경계획)이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들은 농약을 포함한 화학물질등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및 배부하고 화학물질의 안전성 시험을 위한 유효적 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화학약품과 관련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구들이다. 또 IRPTC(독성화학물질등록기구)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기본정보 제공 및 질문에 응답해주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화학물질에 관한 국가정보망이 형성되도록 원조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말레이지아의 페낭에 본부를 두고 있는 PAN(국제농약행동망)은 50여개 국가의 민간단체와 300개 이상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어 FAO의 ‘국제농약행동규약’의 준수 여부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비윤리적인 담합행위(談合行爲)로 국제시장을 독점하는

행위와 독성 농약의 수출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 IOM(국제소비자연합), ELC(국제환경연락센타), OEC(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민간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PIC 운영 절차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가입국이 PIC제도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우선 수행 절차 요약, 연구자료 배부 및 정부 안내문서를 위임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PIC 가입국 내에 PIC 수행기관이 지정되며 이 기관은 PIC가 규정하는 농약의 수입여부 의사결정과 국내 규제상황을 FAO에 통지해야 한다. FAO는 이 통지를 받아 PIC 절차에 포함될 농약을 선정하고 회원국에 규제조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PIC 절차 수행국의 훈련 계획 및 기술이 원조되고 각국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망도 구축한다.

PIC 운영방법 및 결정사항

PIC제도의 이행을 위해 가입국은 우선 자국내에 PIC수행기관을

지정하고, 특정화합물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규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활동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화합물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PIC제도이행의 성공 여부는 관련국가의 규제활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IC지정기관의 폭넓은 활동에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결국 PIC 지정기관이 특정화합물이 PIC 기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FAO/UNEP의 결정이 수립되도록 하여 전 세계적 규제활동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보완, 새로운 목록을 제공하며 또한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운영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PIC 절차하에서의 결정사항은 수입국이 PIC의 통고에 대한 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화합물의 위험요소, 위험제거 기술,

PIC의 성공여부는 관련국가의 규제활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IC 지정 기관의 폭넓은 활동에 있다.

규제행위후의 상황은 물론이고 계속적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점에 대한 예측등이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법과 PIC지정기관의 관련된 정보의 범위도 세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PIC 지정기관의 역할

PIC 운영에 있어 각국 정부는 PIC 지정기관을 지정(指定)해야 한다. 지정된 기관은 어떤 화합물을 금지 또는 규제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규제행위를 FAO/UNEP으로 통보해야 하며, 유해 화합물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함으로써 무역당사자가 PIC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수출·입 국가의 책임분담

PIC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수출국은 자국(自國)에서 판매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농약을 수입국 담당부서의 사전 인지 또는 동의 없이 수출 해서는 안된다』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수입국들이 수입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줌은 물론 수출이 수입국의 결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보증을 해야한다. 그리고 사용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수입국과 FAO 또는 IRPTC에 통지함을 의무화해야 한다.

반면에 수입국은 자국에 사용되는 농약의 수입을 제한 관리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수입과 국내생산을 금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또한 수출국과 마찬가지로 사용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FAO나 IRPTC에 통보해야 한다.

PIC 가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우리나라가 PIC 제도에 가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나라 농약산업의 현 수준과 연구 능력으로 볼때 당분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입국이 요구하는 독성, 잔류,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행 담당부서인 농림수산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긍정적으로 검토, 도입한다면 농약사용자와 농산물 소비자, 환경보전의 모든 면에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부의 식물방역과나 농약연구소의 해외정보처리 업무가 가중되므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및 지도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외국의 PIC 운영실태

네덜란드의 경우 '87년 의회의 촉구에 의해 회원사(會員社)는 사용규제 농약에 대해 자진 통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규정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PIC제도에 근거를 두고 대상농약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로서 UNEP은 사용금지된 농약은 수입국의 동의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고, IRPTC로 하여금 규제농약의 정보를 수집토록하여 통합목록을 2차에 걸쳐 발간했다.

EFC(구주공동체)는 PIC제도의 채택을 고려중에 있으며, FAO, COAG(농업위원회)는 농

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약을 채택하여 여기에 PIC제도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89년에 FAO사업의 일환으로 PIC제도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우리의 입장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유해농약으로 인한 인축 및 환경 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생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등 PIC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태지역들간의 농약관련 정보 및 기술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PIC 도입에 따른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PIC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현 농약 산업계의 설정과 우리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실을 감안해 볼때 부작용 보다는 잇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함으로써 농약 사용자와 농산물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 농업환경 및 자연환경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